

대구지방법원 2022. 6. 8 선고 2021가단119091 판결 [보증금 청구의 소]

전 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온

담당변호사 윤창민, 이신규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중수

변론 종결 2022. 4. 20.

판결 선고 2022. 6.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20. 피고와 C점(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에 관한 지점점포 운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 계약의 목적

1. 피고는 이 사건 매장 영업을 본 계약 조건에 따라 원고에게 점포 관리를 위임하고 피고는 이를 승낙한다.
2. 본 계약서는 원고를 피고 매장의 매니저로 매장 관리에 따른 제반권리와 의무사항을 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상호 합의하여 기간을 정하도록 한다.
2. 연장이 되었을 때에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 단, 백화점의 MD개편에 따른 비용발생은 예외로 한다.

제7조 정산

1. 피고는 매월 12일에 원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의 세금계산서를 제공하고, 원고는 확인 후에 매월 14일에 피고에게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다.
2. 원고는 물품대금을 (주)D으로 지급한다.

제8조 계약금액

계약금	칠백오십만	2017. 6.
중도금	삼천삼백칠십오만	2017. 6.
잔금	삼천삼백칠십오만	2017. 6.
총 금액	칠천오백만	부가세 별도

제9조 비밀유지

1.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점포관리계약에 대하여 제3자 및 백화점 관리자에게 어떠한 경우도 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만약 원고에 의하여 타인 및 백화점 관리자에게 알려져 피고가 백화점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 해지에 따른 피해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11조 양도

1. 원고는 본 매장을 양도양수함에 앞서 피고에게 사전 고지를 해야 하며 승인을 받은 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특약사항

1. 매장 내 발생한 매출의 현금매출은 원고가 직접 관리하고, 카드매출(월 3회, 10일 간격)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매장 내 상주 직접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 중 발생한 백화점 및 아울렛과의 지시 위반 사항(서비스, 위생, 매출에 대한 급격한 사락 등)이 3회 이상 발생 및 원고의 독단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퇴점사유 발생시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원고가 지며,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금액을 배상하지 않는다.

3. 피고의 사정 및 책임으로 인하여 매장이 E백화점으로부터 퇴점하게 되어 원고가 운영을 못했을 경우에는 운영시점으로부터 24개월간 매장비용에 대해 감가를 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한다.

4. 부가가치세 및 기타 세금 정산은 피고가 처리하여 원고에게 청구하고, 원고가 즉시 지급한다.

5. 매장운영관리에 대한 인건비는 피고가 집행하고, 원고는 매월 9일자로 매장에 쓰이는 인건비를 피고에게 지급한다.

6. 정산 총 일정은 매월 9일(인건비), 14일(임대료, 관리비, 물품대금), 30일(물품대금)에 월 3회에 걸쳐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6. 20. 750만 원, 2017. 6. 26. 3,375만 원, 2017. 6. 30. 3,375만 원 등 합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2019. 7. 9. (주) F의 이사 G에게 이 사건 매장의 양수인을 알아보달라고 하면서 양도대금은 9,000만 원 정도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라. 원고는 2021. 2. 말경 이 사건 매장 운영을 중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계약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고만 한다)이 적용되는 가맹계약이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7,500만 원은 물품대금 등을 담보하는 보증금인데, 이 사건 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7,5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3, 5,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H의 대표로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가맹점 운영에 대한 상담 및 안내를 제공하고 있고, 위 홈페이지에는 위 브랜드의 가맹점 개점비용이 I의 경우 6,150만 원, J의 경우 8,800만 원이며, 그 중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내지 300만 원은 가맹계약 해지 만료 후 환급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매장은 위 브랜드의 가맹점인 점, 이 사건 매장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 피고가 이 사건 매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의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2) 그러나 갑 제1,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1)항에서 본 사실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7,500만 원이 이 사건 계약 종료 후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서는 이 사건 계약 기간이 2년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대금으로 피고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정하고 있을 뿐, 위 계약 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위 7,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매장은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되고, 그로 인한 수익 역시 전액 원고에게 귀속되며, 원고는 이 사건 매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의 사정 및 책임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7,500만 원에서 운영하지 못하게 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배상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퇴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원고가 지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체의 돈을 배상하지 않기로 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계약의 명칭이 '지점점포관리운영계약'으로 되어 있고, 계약의 목적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관리를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이 사건 매장을

종국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7,500만 원은 위와 같은 양도양수의 대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일 뿐이다.

② 원고는 2019. 7. 5. 피고에게 이 사건 매장을 제3자에게 양도하겠다고 통보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매장과 업무협력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주식회사 F의 이사 G에게 이 사건 매장의 양수인을 구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 사건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과 빙수기 등 집기 구매비용을 이유로 양도대금은 9,000만 원 정도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피고는 2022.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임대차계약이 2022. 2. 28. 만료되므로 이 사건 매장에 비치된 집기 등을 수거해 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장의 시설, 비품 및 집기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가 이 사건 매장의 처분권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한 양도대금이 역시 종국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되며, 피고와 G 뿐만 아니라 원고 스스로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이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계약이라고 주장하면서 J 또는 I 가맹점 개설시 지불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가맹계약 해지시 반환되는데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7,500만 원도 같은 성격의 돈이므로 이 사건 계약 종료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미 개설되어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던 이 사건 매장의 관리운영권 등을 이전받는 것을 그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를 두고 원고가 피고와 J 또는 I 브랜드에 관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이 사건 계약은 통상 가맹계약이라면 지급되어야 할 로열티에 대한 규정도 없다), 위 브랜드의 가맹점 개설비용 중 가맹계약 해지시 반환되는 계약이행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7,500만 원이 위 계약이행보증금과 같은 성격의 돈으로서 계약 종료시 반환되어야 할 돈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가람